

# 중국의 보조금 현황과 주요국의 대응사례 연구

**박월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중국팀 연구위원  
wlpark@kiep.go.kr

**Sherzod Shadikhodjaev**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다자통상팀 부연구위원  
sherzod1@kiep.go.kr

**나수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중국팀 전문연구원  
syna@kiep.go.kr

**여지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중국팀 전문연구원  
jina7@kiep.go.kr

**마 광** 중국 국립절강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maguang@korea.ac.kr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보조금 이슈가 중요한 국제통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음.
  - 특히 최근 들어 미국, 캐나다, EU 등 주요 선진국과 중국 간에 보조금 관련 통상마찰이 급증하는 추세임.
  
- 중국의 산업고도화 진전으로 주요 산업에서 한국과 중국의 경쟁관계가 가시화되면서 조만간 한·중 간에도 보조금으로 인한 산업피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중국은 철강, 화학, 조선, 반도체, 자동차 등 한국의 주력산업 분야는 물론이고 한국의 신성장동력산업과 상당 부분 중복되는 미래산업 분야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음.
  - 따라서 중국의 보조금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요국의 대응사례를 철저히 검토하여 중국과의 보조금 관련 분쟁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축적해 둘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중국의 주요 산업별 보조금 형태와 유형을 WTO 보조금 규범에 비추어 식별하고, 주요국의 대중국 WTO 보조금 제소 및 상계관세 조치 사례,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논리 등을 분석하고자 함.
  - 이러한 분석을 통해 중국의 보조금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객관적인 시각을 제공하고, 중국과의 보조금 관련 분쟁에 대비한 정부와 기업의 대응책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함.

## 2. 조사 및 분석 결과

### 1) WTO 규범과 중국의 보조금 문제

- 국제교역질서 왜곡을 야기할 수 있는 보조금을 다자 차원에서 규제하기 위한 것이 GATT 제6조(상계관세), 제16조(보조금) 및 WTO 보조금협정임.
- WTO 규제대상이 되는 보조금의 요건은 ① 정부 혹은 공공기관에 의한 재정적 기여 또는 GATT 제16조상의 소득 혹은 가격 지지가 있어야 하고, ② 이로 인한 혜택이 입증되어야 하며, ③ 특정성을 갖추어야 함.
- 보조금은 금지보조금(수출보조금, 수입대체보조금)과 조치가능보조금으로 구분됨.
- 중국은 WTO에 가입하면서 보조금협정상의 보편적 의무조항과 함께 중국에만 적용되는 특정 조항을 이행하는 데 동의하였음.
- 이에 따라 중국의 WTO 가입문서에는 개도국 지위의 부분적 인정, 국유기업의 성격 규정, 투명성 제고, 비시장경제국의 보조금 산정시 적용할 기준 가격 문제 등이 포함됨.
- 이러한 내용은 거대 개도국이자 체제전환국의 잔재가 남아 있는 중국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임.

### 2) 중국의 보조금 형태와 유형

- 중국은 WTO 회원국으로서 매년 자국의 보조금 내역을 WTO에 통보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WTO 가입 문서에서 보조금 목록을 제출한 이후 2006년 4월과 2011년 10월 단 두 차례만 통보의무를 이행함.
- 미국 등 주요국은 중국 보조금정책의 불투명성과 통보 의무 소홀을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음.
- 특히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011년 10월 광범한 분야에 걸쳐 198개 항

목의 중국 보조금 내역을 자체 조사하여 WTO에 통보함.

- 본 연구는 중국의 산업별 보조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0대 산업’과 전략적 신흥산업’을 중심으로 현행 중국의 산업지원정책과 관련 규정을 WTO 보조금협정에 비추어 검토하였음.
- 중국의 보조금 형태와 유형은 개별 산업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상세 내용은 참고자료의 표 참조).
- 금지보조금(수출보조금 및 수입대체보조금)으로 간주될 수 있는 중국의 산업지원 조치는 주로 세제혜택과 금융지원의 형태로 이루어짐.
- 조치가능보조금에 해당될 수 있는 조치들은 금융지원, 구조조정 지원, 세제 지원, 특정기업 지원, 정부구매 지원, 기술개조 지원, 특정지역 지원 등의 형태로 이루어짐.

### 3) WTO 다자감시 메커니즘과 대중국 WTO 보조금 제소 사례

- WTO 회원국 정부는 여타 회원국의 보조금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WTO 다자감시 메커니즘을 활용하거나, WTO에 직접 제소할 수 있음.
- 보조금 관련 다자감시는 주로 TRM(과도기검토 메커니즘)과 TPRM(무역정책검토 메커니즘)을 통해 이루어지며, WTO에 제소하기 전에 협의를 통해 정치적·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절차임.
- 보조금에 대한 제소는 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판정 결과에 따라 금지보조금은 즉시 철회해야 하며, 조치가능보조금은 철회하거나 그 부정적 영향을 제거해야 함.
- 중국은 자국의 보조금과 관련해서 WTO에 가장 많이 제소당한 국가로, 2011년 11월 1일 현재 중국이 WTO에 제소당한 23건의 무역구제조치 중 보조금과 관련된 것이 9건이었음.

- 지금까지 중국이 제소당한 보조금 분쟁 사안은 대부분 협상 단계에서 종료되었으며, 제소국의 요구를 수용하여 해당 법령 자체를 폐지하거나 또는 개정하는 것으로 타결됨.

#### 4)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 사례와 중국의 대응

- 보조금을 받은 상품이 자국 시장으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초래할 경우, 수입국은 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수입상품에 대해 보조금 액수에 상응하는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 중국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는 2004년 캐나다가 처음으로 대중국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한 이후 주로 미국, 캐나다, EU, 호주 등 선진국들에 의해 취해짐.
  -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캐나다의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짐.
- 미국은 비시장경제국에 대해서는 상계관세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2007년 이전까지는 중국에 상계관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그러나 2007년 중국산 인쇄용지에 대한 상계관세 예비관정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제지, 철강, 화학, 타이어 등을 대상으로 총 26건의 대중국 상계관세 조사를 벌였으며, 이 중 22건에 대해 상계관세 부과를 확정함(2011년 6월 30일 기준).
- 캐나다는 2004년 4월 중국산 베이컨구이석쇠에 대해 상계관세 조사를 실시한 이후 2010년까지 10건의 조사를 벌였으며, 이 중 9건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함(2011년 6월 30일 기준).
- 본 연구에서 미국과 캐나다의 대중국 상계관세 부과(최종판정 기준) 사례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남.

- 상계관세 부과 대상 품목 중 철강제품에 대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음.
  - 미국과 캐나다로부터 가장 빈번하게 조치가능보조금으로 판정받은 보조금 형태는 소득세 감면 프로그램과 적정가격 미만의 투입요소 제공임.
  - 미국과 캐나다는 상계관세 조사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대상에 대해서는 징벌적 성격의 고관세율을 부과함.
  - 미국과 캐나다의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는 모두 반덤핑관세를 동시에 부과한 ‘중복부과’에 해당함.
- 주요국의 보조금 관련 규제에 대해 중국은 가급적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자제하고 상계관세 조치 활용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임.
- 그러나 상대국의 조치로 인해 중국의 이익이 훼손될 경우에는 WTO 제소, 보복 차원의 상계관세 조치 부과 등을 통해 적극 대처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음.

### 3. 시사점 및 대응방안

#### 1) 중국의 보조금 및 주요국의 대응사례에 관한 체계적 모니터링과 정보 축적이 중요

- 중국의 보조금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조금의 실태 파악과 체계적인 정보 축적이 선행되어야 함.
- 중국의 산업 보조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식 문건이 아닌 관행에 의한 것도 적지 않으며, 중앙의 정책 외에 지방정부 차원의 조치이거나 접근이 어려운 암묵적이고 불투명한 방식의 보조도 많음.
  - 따라서 중국의 보조금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특정 산업, 업종, 지역에 대한 지원이 포함된 정책 및 제도 등 공식문건의 검토와 더불어 실

제 집행 상황이나 관행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병행해야 함.

- 정책 및 제도 검토는 정부 관련 부서 혹은 연구기관에서, 실제 집행 상황이나 관행에 관한 실사는 현지 무역관이나 중국상회 혹은 업종별 협회 등에서 분담하는 것이 효율적임.

■ 중국의 보조금 동향과 관련 쟁점을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수단으로서 WTO 다자감시 메커니즘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보조금상계관세위원회나 무역정책검토 메커니즘(TPRM) 등을 통해 중국의 보조금정책에 관한 문의 혹은 지적사항을 제기하면서 다자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함.

■ 이와 함께 주요국의 대중국 보조금 분쟁 사안에 대한 모니터링을 병행함으로써, 한국이 상계관세 관련 분쟁에 휘말릴 경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공식 문건에 포함된 지원조치는 실제로 시행되어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입증되기 전에는 보조금협정 위반 여부를 판정하기 어렵고, 동일한 정책이라도 사안에 따라 적용 여부나 유형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임.

■ 중국의 보조금 모니터링 및 자료정리 과정에는 국제통상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은 물론, 중국경제 및 산업 전문가 그룹의 참여가 필수적임.

- 중국정부의 지원조치가 WTO 규범상의 보조금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 특히 중국이 특정 산업 혹은 기업에 제공한 보조금으로 인해 우리 산업 및 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가 필요한바, 이러한 작업에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됨.

## 2) 중국의 보조금 문제에 대한 사안별 대응책 필요

- 한국은 중국의 보조금과 관련하여 WTO 제소나 상계관세 부과를 통해 사안별로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우선, 중국의 보조금으로 인한 무역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중국의 정책 및 제도 변화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WTO 제소를 고려해야 함.
  - 특히 금지보조금으로 분류될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WTO 제소를 적극 검토해 볼 수 있음.
- 반면, 중국의 보조금으로 인한 특정 산업 및 기업의 피해 구제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상계관세 조사 및 부과를 고려해야 함.
  - 상계조치는 교역상대국의 산업지원정책 및 제도 전반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통상이익이 걸려 있는 특정 산업부문이나 특정 기업에 국한하여 규제를 발동하기 때문에, 통상마찰의 범주를 불필요하게 확대시키지 않고서도 국내산업 보호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 한국은 지금까지 타국에 대해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하거나 부과한 사례가 없었지만, 금후로는 대중국 무역구제수단으로 적극적인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상계조치는 한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 핵심산업의 고도화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음.
- 한편, 중국이 한국의 보조금에 대해 무역구제조치를 발동한 경우에는 소극적·방어적인 대처보다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임.
  - 과거 한국은 하이닉스 반도체 및 조선업 보조금 분쟁에서 외국(미국, EU, 일본)의 상계관세 혹은 WTO 제소에 대해 능동적으로 맞대응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음.



### 3) 중국 보조금 문제의 특수성, 무역구제조치의 파급효과를 숙지하여 국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

- 중국의 보조금 정책이나 제도는 체제전환국의 잔재, 정보의 비접근성과 불투명성 등으로 실태 파악 자체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함.
  - 이를 위해 정부, 유관기관, 업계 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체계적인 보조금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중 간에 보조금 관련 정보공유 채널을 활성화시켜야 함.
- 또한 정부나 업계는 보조금 관련 무역구제조치의 절차와 파급효과를 숙지하여 국익에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해야 함.
  - 중국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은 대부분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포함한 외국투자기업도 수혜 대상임.
  - 만약 한국이 중국의 보조금을 WTO에 제소하여 승소할 경우 중국은 보조금을 아예 철폐하거나 규정을 개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결과 중국 내 한국기업이 누렸던 혜택도 상실됨.
  - 따라서 사안별로 국내기업과 중국에 투자한 한국기업의 이해가 상충될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제3국으로 참여하거나, WTO 제소 대신 상계관세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 보조금을 상쇄시키기 위한 WTO 제소 혹은 상계조치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실익을 따져 보아야 함.
  - 즉 WTO 분쟁해결 절차와 소요 기간, 보조금협정의 명백한 위반 소지 여부, 피해의 심각성 정도, 중국과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구체적인 조치를 개시할 필요가 있음.

#### 4) 한국의 보조금에 대한 중국의 무역구제조치 발동 가능성에 대비

- 한국은 과거에 외국으로부터 상계관세 조치를 자주 당한 국가에 속하는바, 중국이 한국의 보조금에 대해 무역구제조치를 발동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함.
  - 아직까지 한·중 간에 보조금 관련 통상분쟁은 없었으나, 중국은 단일국가로서는 가장 빈번하게 한국제품에 반덤핑 규제를 부과한 바 있으며, 장차 기존의 반덤핑 조치 대상 품목을 중심으로 상계조치 발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과의 보조금 관련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가급적 특정성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산업지원이나 보조금 정책 방향을 산업 전반에 걸친 간접적인 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지자체 차원의 보조금에 대해서도 세심한 점검이 필요함.
  
- 실제 분쟁 발생시에는 조사과정에서 적극적인 협조 자세가 중요함.
  - 주요국의 대중국 상계조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조사과정에서 비협조적일 경우 징벌적 차원에서 고관세율이 부과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 따라서 조사 요청에 성실하게 임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부당한 사안일 경우 한국측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는 기회로 삼아야 함.

#### 5) 업계와 정부 간 대화채널 정례화, 전문인력 양성, 법규 정비

- 업계가 보조금 관련 제소 혹은 피소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간담회, 설문조사 실시 등 정부 담당부처와의 대화채널을 정례화시킬 필요가 있음.
  
- 보조금 여부의 판정, 구체적인 피해 입증, 적정한 수준 산정 등 보조금 관련 국제분쟁절차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 양성, 관련 법규의 정비가 중요하며, 주무 부처인 무역위원회의 역할 강화도 필요함.

## [참고자료]

### 1. 중국의 10대 산업 진흥책에 나타난 보조금 형태와 유형

산업	분류	유형	보조 내용	관련 규정
철강	P	수출보조금	수출신용대출, 수출관세환급율 인상, 수출신용보험	「철강산업발전정책」 제27조, 「철강산업 조정과 진흥계획」 제4조 1항, 10항
	A	금융지원, 특정기업 지원	대출이자 대납, 재정지원, 대형핵심기업 지원	「철강산업 조정과 진흥계획」 제4조 3항, 9항
자동차	P	수출보조금, 수입 대체보조금	국제자동차부품구매체계에 포함된 부품생산기업지원, 국산브랜드차량의 국내외시장점유목표 확정	「자동차산업 발전정책」 제31조, 「자동차산업 조정과 진흥계획」 제2조 3항
	A	금융지원	중앙정부의 자금투입	「자동차산업 조정과 진흥계획」 제4조 9항
조선	P	수입대체보조금	제품의 내수판매 지원(부가세 환급)	「선박공업조정과 진흥계획」 제4조 4항
	A	금융지원, 특정기업 지원	우대대출, 투자기금 설립 지원, 선박조기 건조 위해 예산자금 투입, 핵심기업에 대한 지원	「선박공업조정과 진흥계획」 제4조 1항, 「선박공업의 평온하고 빠른 발전을 유지하는 것에 관한 공업정보화부 의견」 제5조
석유 화학	A	금융지원, 세제지원	신용대출, 기술개조 전용자금 설립, 합병 및재편 지원, 세수우대	「석유화학산업조정과 진흥계획」 제4조 3항, 제4조 5항, 8항, 「농약산업정책」 제25조, 「타이어산업정책의 인쇄 배포에 관한 공업정보화부의 공고」 제10조
방직	P	수출보조금, 수입대체보조금	수출관세환급율 인상, 방직산업의 국산화 지원	「방직공업 조정과 진흥계획」 제3조 7항, 제4조 1항과 3항
	A	금융지원, 특정기업 지원	정부의 면화, 생사 구매 강화, 방직산업의 기술개조, 합병과 재편 지원, 신용대출 우대, 부실채권 심의요건 완화, 중소기업 세액공제, 기업채권 발행지원, 대출확대 등	「방직공업 조정과 진흥계획」 제4조 2항, 3항, 5항, 6항, 「중소형 방직기업지원을 위한 국무원판공청 의견」
경공업	P	수출보조금, 수입대체보조금	수출관세환급율 인상, 국산장비생산 지원, 수출신용대출, 수출신용보험, 대외무역발전기금	「경공업 조정과 진흥계획」 제4조 2항, 5항, 6항, 7항
	A	금융지원, 기술지원, 특정기업 지원, 구조조정지원	농민의 전자제품 구매시 정부보조, 기술지원, 신용대출과 대출금 상환 연기, 부실채권 삭제, 중소기업 신용담보, 중소기업발전 전문기금, 사회보험료 납부연기 및 요율 인하, 기업합병 재편 지원	「경공업 조정과 진흥계획」 1항, 5항, 6항, 7항, 9항
비철 금속	P	수출보조금	수출관세환급율 인상	「비철금속산업 조정과 진흥계획」 제4조 1항
	A	금융지원, 특정기업 지원, 구조조정지원	대출이자 대납, 대형기업 합병재편 지원, 핵심기업에 대형광구 배치, 핵심기업의 주식과 채권 발행지원	「비철금속산업 조정과 진흥계획」 제4조 3항, 8항, 9항

중국의 보조금 현황과 주요국의 대응사례 연구

참고자료 1. 계속

산업	분류	유형	보조 내용	관련 규정
장비 제조	P	수출보조금, 수입대체보조금	국산장비에 대한 지원과 국산장비의 사용 지원, 수출관세환급을 인상, 수출신용대출	「장비제조업 조정과 진흥계획」 제4조 2항, 3항, 4항, 5항
	A	세제지원, 구조조정지원, 금융지원	관세와 수입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의 환급, 기업합병 및 재편 지원, 에너지절약 제품에 대한 지원, 농기구 구매보조금 지원	「장비제조업 조정과 진흥계획」 제4조 6항, 7항, 8항
전자 정보	P	수출보조금, 수입대체보조금	수출관세 환급, 수출신용보험, 수출신용대출 제공, 수출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우대, 인증비용 지급, 기업소득세 감면, 지적권 신청비용 등의 지원, 국산장비에 대한 지원	「전자정보산업 조정과 진흥계획」 제4조 6항, 「소프트웨어산업과 집적회로산업의 발전을 고무하는 일부 정책의 인쇄 배포에 관한 국무원 통지」 제7조, 제12조, 제17조, 「소프트웨어 수출에 관한 통지」 제1조 4항 2절, 제1조 6항, 제15조, 「소프트웨어 및 관련정보서비스 수출에 관한 지도의견」 제11항, 제20항, 「반도체 조명 에너지절약 산업의 발전에 관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 공업과 정보화부 등의 통지」 제4조 5항
	A	금융지원, 특정기업 지원, 구조조정지원, 세제지원	자금지원, 소프트웨어와 집적회로산업 지원, 우대금리에 의한 수입신용대출 제공, 합병과 재편 지원, 수입관세 면제	「전자정보산업 조정과 진흥계획」 제4조 2항-4항, 「반도체 조명 에너지절약 산업의 발전에 관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 공업과 정보화부 등의 통지」 제4조 3항 및 5항
물류	A	금융지원	인프라시설 건설자금 지원, 대출이자 대납	「물류업 조정과 진흥계획에 관한 국무원 통지」 제5조 5항

주: P-금지보조금, A-조치가능보조금

\* 이 표에서 보조금의 유형 분류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WTO 보조금 규범에 비추어 그렇게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임. 따라서 실제 사안에서 금지 혹은 조치가능보조금 여부의 판단은 상기 보조내용 및 관련 규정과 구체적인 피해상황의 상관관계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중국의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책에 나타난 보조금

산업	분류	유형	보조 내용	관련 규정
전략적 신흥 산업	A	금융지원, 세제지원	발전기금 설립과 자금투입, 세수지원, 신용대출과 위험보상, 창업투자기금 투입 및 확대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국무원 결정」 제7조 1항,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국무원 결정」 제7조 1-3항, 5항, 「신흥산업 창업투자계획 주시참여 창업투자 기금관리 잠정방법의 인쇄 배포에 관한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통지」 제2조, 제7조, 제8조
에너지 절약/ 환경 보호	P	수출보조금	수출지원	「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분야 금융서비스업무의 개진과 강화에 대한 중국인민은행의 지도의견」 제3조 2항
	A	금융지원	주차요금 우대, 신용대출지원	「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형 소형차 발전에 관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부문의 의견 관련 국무원판공청 통지」 제3조 1항, 2항
바이오	A	금융지원, 특정기업 지원, 세제지원	정부의 바이오제품 구매의무, 연구개발 지원, 기업소득세 인하, 석유가격 인상에 대한 보조, 특정기업 보조, 세수우대	「바이오 산업의 가속발전을 촉진하는 것에 관한 일부 정책의 인쇄 발행에 관한 국무원판공청의 통지」 제6조 21항, 22항, 「바이오에너지와 바이오화공 재정세무 지원정책 발전에 관한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농업부, 국가세무총국, 국가임업국의 실시의견」 제2조 4항-6항
신에너지 자동차	A	금융지원	생산기업에 대한 보조	「개인의 신에너지자동차 구매보조금 시범실시에 관한 재정부, 과학기술부, 공업과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통지」 제5조
	P	수입대체보조금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이용설비의 국산화생산 촉진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전문자금 관리잠정방법」 제3조 5항, 제17조
신에너지	A	세제지원	기업소득세 특혜 부여	「재생가능에너지 중장기 발전계획의 인쇄 배포에 관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통지」 제8조 5항, 「풍력발전설비산업화 전용자금관리 잠정방법의 인쇄 배포에 관한 재정부의 통지」 제4조

주: P-금지보조금, A-조치가능보조금

\* 이 표에서 보조금의 유형 분류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법률적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WTO 보조금 규범에 비추어 이와같이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임. 따라서 실제 사안에서 금지 혹은 조치가능보조금 여부의 판단은 상기 보조내용 및 관련 규정과 구체적인 피해상황의 상관관계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